

제1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	6,135,725,000	306,786,250
일 반 회 계		5,150,000,000	257,500,000
특 별 회 계		985,725,000	49,286,250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450,000,000	22,500,000
	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	450,000,000	22,500,000
	기 타 특 별 회 계	535,725,000	26,786,250
	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422,572,000	21,128,600
	치 수 사 업	44,240,000	2,212,000
	경 북 도 립 대 학	9,110,000	455,500
	광 역 교 통 시 설	4,321,000	216,050
	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	54,170,000	2,708,500
	학 교 용 지 부 담 금	1,312,000	65,60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“채무부담행위조서” 와 같다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,829,3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6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